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25 선고 2024가단524462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유한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1. 11.

판결 선고 2024. 11. 25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[별지2]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49지분에 관하여 2023. 7. 14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2,253,06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,253,0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[별지1]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.

2. 적용법조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승곤

별지